[별지 제130호서식] <개정 2024. 9. 20.>

우체국
요금후납

보내는 사람
□□□ - □□□

행정우편

받는 사람
□□□ - □□□

접 는 선

제 호

기능검정원·강사 자격 (□정지·□취소) 결정통지서

자격증 번호	학과교육강사	
	기능교육강사	
	기 능 검 정 원	
행정처분 결정내용	취 소 처 분	년 월 일
	정 지 처 분	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일간)
사 유		

「도로교통법」 (□ 제106조제5항, □ 제107조제5항)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(□ 취소, □ 정지)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·도 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접 는 선

안내전화: 담당자: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 직인

※ 알려드립니다.

1.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집행됩니다.
2.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]